

청년 1인 채용 시 최대 528만원 지원

#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안내

기업에게  
채용여력  
지원을

청년에게  
일경험  
기회를



01

###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?

- 청년에게 중소·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,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(2020년 한시사업)
- 청년을 채용한 중소·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(월 최대 80만원)와 관리비(인건비의 10%)를 지원

02

### 지원 대상

-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**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** 또는 **중견기업**
- » 5인 이상: 「고용보험법」 제2호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(사업주,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)(사업주 단위로 산정)
- » 우선지원대상기업: 「고용보험법」 상 우선지원대상기업
- » 중견기업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상 중견기업
- ※ 단,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·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, 성장유망업종, 청년 창업기업은 1인 이상이라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

### ! 지원제외 기업

- 소비·향락업, 부동산업,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등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기업, 학교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 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
-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
03

### 지원 요건

**기업 요건**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(신청일 포함)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없을 것

**청년 요건** (연령) 채용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
 - 만 18세 미만인 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(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기록사항)를 확인  
 -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 연장(최고 만 39세)

(미취업 상태)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
 -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, 계약직·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,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취업중인 자로 봄

(근로조건 등)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, 4대 사회보험 가입,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, 멘토 지정 월 1회 업무지도·교육 실시 등

### ! 지원제외 청년

- 동일한 사업장에서 "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"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
- 다른 사업장에서 "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" 또는 "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"에 참여 중인 자
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인 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※ 단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-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자
-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※ 단,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
-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(졸업 예정자는 가능)

## 04 지원 내용

- (지원기간) 2020.12.31 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
- (지원한도)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% 이내(최대 30명 상한)
  - 단, 사업 확대 등 필요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 수의 40%까지 가능(최대 30명 상한)
  - 참여청년의 정규직 전환,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추가 채용 시에는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 지원기간 내에서 지기원능
- (지원수준)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(최대 월 80만원)와 관리비(인건비의 10%, 최대 월 8만원)

주당 근로시간	총 지급액	인건비	관리비
30시간 이상	88만 원	80만 원	8만 원
20시간 이상	66만 원	60만 원	6만 원
15시간 이상	44만 원	40만 원	4만 원

〈근로시간별 지원금 차등 지급〉

## 05 지원 절차



**01 참여신청**  
 기업이 "워크넷-일경험" 누리집 (www.work.go.kr/youthjob) 에서 지역선택 후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
 경북지역 아이비잡스  
 경남지역 아이비잡스 미션지점

**02 지원협약**  
 운영기관이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 
 ↓  
 운영기관-기업간 지원협약 체결

**03 청년 채용**  
 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채용

**04 채용자명단 통보**  
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

**05 지원금 신청**  
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

※ 청년 채용 후 9개월(첫달 포함)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고,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 신청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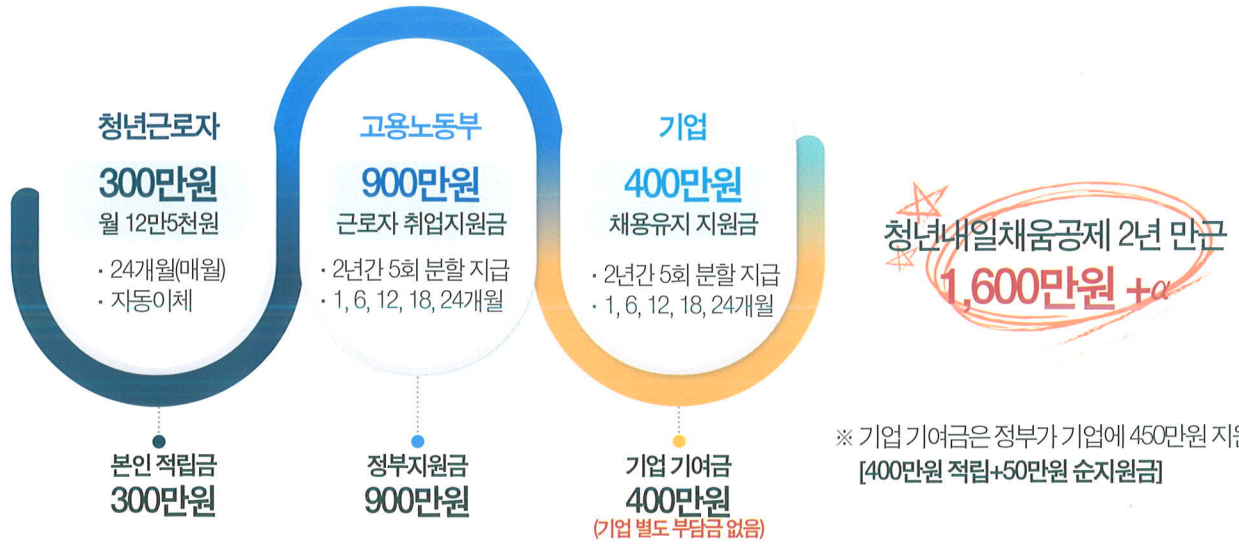
### 잠깐~~

일경험지원 기간이 종료 후 청년을 정규직 전환 시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며 아이비잡스에서 해당 청년을 연계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.

## 06 청년내일채움공제

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"청년·기업·정부"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

### »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



## (주)아이비잡스

-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**3년 인증**
- 취업성공패키지 기관평가 **A등급**

"Best Platform for Jobs"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주요사업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입니다.

### » 주요사업

- **청년일경험지원사업**: 청년에게 중소기업에 일경험 기회를 제공  
- 2020년 승인인원: 400명
- **청년내일채움공제**: 중소기업 우수인력 고용유지,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지원  
- 2020년 승인인원: 356명
- **취업성공패키지**: 취업희망자의 성공취업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 
- 2019년 12월 기준 약 6,000 여명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- **전직지원서비스**: 퇴직으로 인한 충격 완화와 생애 재설계를 위한 서비스 지원

### » 연혁

- 2020년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위탁
- 2020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위탁
-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기관 3년 인증 2개 사무소 (선린대, 포항대사무소)
- 2019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기관 평가 2년 연속 A 등급 (선린대, 포항대사무소)
-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기관 3년 인증 2개 사무소 (포항, 마산 사무소)
- 2018년 고용서비스 전문기관 육성을 위해 법인 변경 비영리 훈련법인 (재)이찬 경북직업전문학교에서 (주)아이비잡스 변경/4개 사무소 설치
- 2010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위탁



· 포항사무소\_포항시 북구 용당로 66 (용흥동)



· 마산사무소\_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60

## (주)아이비잡스

### [포항 사무소]

- Tel 054-272-3401 / Fax 054-274-6090
- 주소: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66(용흥동)  
(재)이찬 경북직업전문학교 1층

### [마산 사무소]

- Tel 055-292-4048 / Fax 055-293-4400
- 주소: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60  
(재)이찬 경남직업전문학교 4층